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국민은행

2. 조치일 : 2018. 11. 26.

3. 조치내용

대 상	내 용
기 관	개선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업무절차 불합리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일반계좌를 개설한 이후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하면서 자금세탁 등에 이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상통화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명의의 일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거래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이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 관련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람

(2)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 불합리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금융정보분석원, 2018.1.30.)을 반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을 운영중이나,

① 금융정보분석원이 제시한 의심거래 유형과 유사한 해외송금 거래가 가상통화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대상으로 추출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② 가상통화 관련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수립하면서 일부 고객유형 및 거래형태를 제외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출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상통화 관련 주요 의심스러운 거래 유형이 추출되도록 보완하시기 바람